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1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 박지혜・이건태・조인철

허 영ㆍ이재강ㆍ위성곤

민형배 · 김영환 · 이소영

정준호 · 김원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였음.

현행법은 이러한 낙후된 주한미군 주둔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반환받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총괄적인 조정 역할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를 두어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용, 공공용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부지 매입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신설, 제8조, 제13조의2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 · 관리한다
-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 1. 반환공여구역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4. 제6조의3에 따른 차입금
- 5. 그 밖의 수입금
- ④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 2. 제3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3. 제6조의3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4. 제23조제4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의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
- 5. 제2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자금
- 6. 제25조에 따른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에 필요한 자금
- 7. 제26조에 따른 교육·문화·관광시설의 설치·유치에 필요한 자금
- 8. 제27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 기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자금
- 9. 회계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자금
- 10.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제6조의3(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

하여야 한다.

- 제6조의4(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의5(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 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의6(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을 "제13조의2에 따른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의 심의를"로,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확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정 또는 변경한"을 "확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후단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등) 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주한미군반환 공여지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활용 기본방향에 관한사항
 - 2.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의 운영·지원과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한미군반 환공여지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로,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소요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용·공공용시설로 조성 하고자 하는 토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재 정 안 제6조의2(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 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 발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 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관리한다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반환공여구역의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 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 터의 예수금 4. 제6조의3에 따른 차입금

- 5. 그 밖의 수입금
- ④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 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 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 비
- 2. 제3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3. 제6조의3에 따른 차입금의원리금 상환
- 4. 제23조제4항에 따른 반환공 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의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 는 임금의 지원에 필요한 자 금
- 5. 제2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자금
- 6. 제25조에 따른 사회복지 및주한미군교육 지원에 필요한자금
- 7. 제26조에 따른 교육·문화· 관광시설의 설치·유치에 필 요한 자금
- 8. 제27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

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 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에 필 요한 자금 9. 회계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자금 10.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제6조의3(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 <신 설>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 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4(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신 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u><신</u>설> 제6조의5(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 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 <신 설>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 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신설>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 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u>제1항에</u>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6(세출여	계산	의	기월)	ठ्रे	계
의	세출	·예산	중	당하] 회기	베연	도
내	케	지출히	<u> </u> 지	0}1	니한	것	은
٦٤	국가	재정법	 _	제48	3조에	도	불
<u>구</u> さ	하고	다음	연	도에	٥] {	실히	-여
사-	용할	수 있	(다.				

①제13조의2
에 따른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
발위원회의 심의를
확정한다. <단서
삭제>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를 거칠 수 있다.

-3
<u></u>
정한
<u>.</u>
③제1항
후단에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 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 발위원회 등) ① 주한미군 반 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 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 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 1.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

 역주변지역의 활용 기본방향

 에 관한 사항
- 2.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 역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 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
- 2. 도시 및 지역개발에 관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의 운영·지원과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 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 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대</u> 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② ~ ④ (생 략)

-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 구역 등 활용 지원) ①국가는 | 구역 등 활용 지원) ①-----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 1. 2. (현행과 같음)
 - 3.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 전을 위한 공용・공공용시설 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소요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